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절세전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해마다 모든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꼭 신고하도록 한다. 정리·정솔이 기자·사진_이성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선택하기

종합소득세는 기장에 따른 신고방법 또는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장에 따른 신고방법은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장에 의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추계신고에 따른 방법은 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각종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추계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이 실제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사업 손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장에 따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기장, 추계신고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베이커리〉 2005년

2·3월호 절세플러스 참고

소득공제 활용하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 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가 한정돼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보험 및 개인연금보험 공제(연간 24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호적 등본을 제출하면 소득세를 부모 1인당 최대 3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근거 증빙 자료를 제출해 소득세를 절감한다.

Advice
정동현

〈정동현세무사무소〉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 현재 부동산증개업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와 차과정보지 〈덴포라인〉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납부기한을 지킬 것!

부득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만은 반드시 해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 신고·납부한다.

2 합산 신고할 것!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만 신고해 추후에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고소득자는 기장을 할 것!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의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장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종전에 10%에서 인상됨.) ☺

